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192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가 2018.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40,748,870원, 지방교육세 31,348,560원, 농어촌특별세 15,67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도지사는 2008. 10. 24. [redacted]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체육시설을 신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redacted]도 고시 C).

나. 피고는 2009. 3.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redacted]시 고시 E),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redacted]시 B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redacted]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F 조성사업
③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927,482㎡
- 사업의 규모: 골프장 18홀(회원제)

다.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4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 그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9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D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I은행, J은행, K은행, L은행(이하 '이 사건 M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D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였던 이 사건 M은행들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6.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28.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 (2) 별지1 목록 순번 98 내지 14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2014. 9. 3. 강제경매절차에서 N, O에게 매각되었다. (3) 별지1 목록 순번 14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redacted]시 명의의 압류등기, 2014. 7. 1.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15. 1. 28. 및 2015. 10. 14. 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M은행들로부터 126억 원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무렵 N, O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도 2016.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redacted]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F)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redacted]시 고시 Q).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B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기정) [redacted]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F) 사업
(변경) [redacted]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R)사업
- 명칭: (기정) F 조성사업 (회원제 18홀)
(변경) R 조성사업 (대중제 18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③ 시행자의 성명: (기정)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변경) A 주식회사 대표이사 S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927,513㎡

사.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 12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억 7,96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8. 2. 10. 원고에게 '원고가 D에 지급한 대위변제비용 등 별지2 표 기재 합계 6,815,795,572원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그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340,748,870원, 지방교육세 31,348,560원, 농어촌특별세 15,674,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물건을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이 사건 제1, 2, 3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주장하였고(피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제출 2021. 8. 4.자 준비서면 등 참조), ② 명시적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법인장부를 검토한 결과 송수관로 시설물 취득비용 등이 확인되어, 원고가 취득가격에서 누락한 금액이 7,868,167,352원(= 추가 확인 비용 등을 반영한 별지3 표 기재 금액 7,707,513,624원 + 원고 인정 금액 160,653,728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마찬가지로 피고 제출 2021. 8. 4.자 준비서면 등 참조), 위 각각의 주장을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취득일, 면적, 필지의 수, 과세표준 등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각각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과세물건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송수관로 취득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사유(이 사건 처분의 과세물건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취득가격은 별지2 표 기재 합계 6,815,795,572원이라는 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별지2 표 순번 5 내지 17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다만, 원고도 별지2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합계 160,653,728원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등이 원고의 계정별 원장 등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쟁점비용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4, 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하기 전인 2016. 4. 2. T[과거 D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D의 대주주(지분 65%)인 U의 매제이자 D의 주주였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를 적법·유효하게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T)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을은 갑에게 다음의 용역 업무를 제공한다.
①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갑이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점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② 갑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 및 지위를 D로부터 승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③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위치한 V·W이 각 관리하는 분묘 및 합자회사 X 소유 시설물의 이장 또는 이전 업무
④ 별첨 2 내지 5에 기재된 D의 채무의 조정 및 정리 업무
제3조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 업무)
① 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M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은 …… 갑이 이 사건 M은행들과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N, O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1. 을은 …… N, O와 갑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은 …… 위 토지에 대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P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후, P이 갑에게 위 토지를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 기재 매매대금은 별첨 5 <개인 외부차입금 변제계획> 기재 P에 대한 미지급 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갑은 제6조 제2항 기재 본건 채무 9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위 매매대금 112,000,000원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3건의 압류 등기가 말소될 수 있도록 압류권자인 [redacted]시, 국에 지체 공과금 등을 완납하고, 기타 어떠한 사용제한이나 등기부등본상 갑의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D이 체납한 별첨 2의 지방세([redacted]시) 4억 5,000만 원으로 인한 [redacted]시의 압류는 갑이 …… 4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압류가 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대위변제금액이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갑이 대위변제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액에서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본건 실시계획인가 등 승계 업무)

① 을은 갑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이 사건 M은행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M은행들로 하여금 D로부터 2010. 2.경 제공받은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이 사건 M은행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사업시행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모든 지위 및 권리의 승계인으로 갑을 지정하도록 한다.

② 갑은 제3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권 취득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승계인 지정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D에서 갑으로, 골프장 운영방법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할 예정인바, 을은 위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승계를 포함하여 갑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서류의 준비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

④ 을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 본조 제2항의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D 및 D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6조(본건 채무 조정 및 정리 업무)

① 을은 본건 채무 이외에는 D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갑은 본건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제책임이 없다. 본건 채무 이외에 갑이 D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D과 연대하여 그 채무 전액을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건 채무의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각 채무액을 별첨 2 내지 5의 각 지급예정액 및 지급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 2 내지 5에 기재된 본건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이행각서 등을 징구한다. (후문 생략)

④ 갑은 제4조에 기재된 사업계획승인 지위승계 및 대중제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고, 위 3항 기재 합의서 및 이행각서 징구가 완료된 직후 본건 채무를 즉시 대위변제한다.

제7조(용역비 및 지급시기)

① 을의 노력으로, 본 건 지장물 중 W이 관리하는 분묘 및 X 소유 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전비용 한도인 15억 원 미만으로 감소시킬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본 건 용역에 대한 상여(이하 '본 건 용역비'라 한다)로 지급하며,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을의 D에 대한 임금채권 및 차용금 등을 포함하여 10억 원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을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본 건 용역비를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 본 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 실시계획인가 변경, 본 건 지장물 이전 완료, 본 건 채무 조정 및 변제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본 계약 관련 갑의 부담 총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지출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갑의 부담총액 합계와 상관없이 259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 149억 원

② 제5조 제2항 기재 지장물 이전 비용: 15억 원

③ 제6조 제2항 기재 본건 채무 총액: 98억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별첨2. 미지급기타비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D이 [redacted]시에 체납한 지방세 중 4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D의 각종 채무(각종 사용료, 도로점용료, 분묘보상잔금, 소송관련비용, 임직원 미지급 급여 등)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그 외에도 위 계약서에는 '별첨3. 미지급 용역비', '별첨4. 미지급공사비', '별첨5. 개인 외부차입금 변제계획' 등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D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채무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D이 체납한 지방세를 대위변제한 것을 비롯하여(그에 따라 2016. 7. 4.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redacted]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계약 후 D의 미지급 급여, 공사비, 개인차입금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거나 분묘이장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15,795,572원(이 사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쟁점비용 대부분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다. 그런데 원고는 D이 아닌 이 사건 M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 하였다. D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행사된 결과일 뿐이고 D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토지는 약 5년 가까이 이 사건 M은행들의 소유였다. 그 밖에 D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M은행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즉, 원고가 D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거나 D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으므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제1조)과 용역업무의 범위(제2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권리 취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위 취득,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위치한 제3자 소유의 분묘 및 지장물의 이장 또는 이전, D의 채무 조정 및 정리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각각 그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각자를 상호 대가관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T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규정하였다. T가 이 사건 계약에서 이행하여할 용역업무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도록 해주기 위한 소개·알선·협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격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일종의 소개수수료 등)은 T에게 지급할 용역비 중 해당 부분이 되는 것이지,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등이 취득절차비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D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1년경 골프장 조성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년에는 아예 폐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위 근로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표출하는 불평·불만을 가라앉히고 민원을 해소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을(T)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D 및 D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3, 4항에서는 '을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이행각서 등을 징구하고, 원고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그 징구가 완료된 직후 본건 채무를 즉시 대위변제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도 그러한 동기와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피고는 2016. 6.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이 체납한 지방세를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으로 대위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D의 미지급 공사비, 급여, 차입금 채무 등은 그 성질상 이 사건 제1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거나, 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가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비용 중 별지2 순번 7의 분묘이장보상비의 경우 이주비 또는 지장물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쟁점비용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쟁점비용 중 별지2 순번 12의 지방세체납액의 경우 D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압류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된 비용이다.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등이 '원고와 D이 취득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세 등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상호 담합한 것이고 이러한 담합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담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탈세 목적으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분만이 취소되어야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2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부분)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지 않아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별지1

목록

No	위치	자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임	14,281	14,281	14,281	14,281
2			전	1,597	1,597	1,597	1,597
3			답	659	659	659	659
4			답	1,345	1,345	1,345	1,345
5			답	1,335	1,335	1,335	1,335
6			답	198	198	198	198
7			전	803	803	803	803
8			전	2,261	2,261	2,261	2,261
9			임	21,223	21,223	21,223	21,223
10			임	11,207	11,207	11,207	11,207
11			임	8,826	8,826	4,719	4,719
						4,107	4,107
12			전	347	347	347	347
13			답	5,058	5,058	5,058	5,058
14			답	1,683	1,683	1,683	1,683
15			전	7,729	7,729	7,729	7,729
16			대	307	307	307	307
17			임	22,810	22,810	22,810	22,810
18			임	29,256	29,256	29,256	29,256
19			임	14,182	14,182	14,182	14,182
20			임	68,033	68,033	68,033	68,033
21			전	4,347	4,347	4,347	4,347
22			전	760	760	760	760
23			전	456	456	456	456
24			답	1,613	1,613	1,613	1,613
25			답	1,493	1,493	1,493	1,493
26			전	270	270	270	2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No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7			임	41,851	41,851	40,859	40,859
						992	992
28			대	165	165	165	165
29			대	486	486	486	486
30			전	7,699	7,699	7,699	7,699
31			전	1,689	1,689	1,689	1,689
32			임	40,388	40,388	40,388	40,388
33			전	4,982	4,982	4,982	4,982
34			전	793	793	793	793
35			대	172	172	172	172
36			전	2,307	2,307	2,307	2,307
37			임	40,562	40,562	40,562	40,562
38			답	1,769	1,769	1,769	1,769
39			답	1,693	1,693	1,693	1,693
40			대	317	317	317	317
41			전	1,160	1,160	1,160	1,160
42			전	2,473	2,473	2,473	2,473
43			전	1,706	1,706	1,706	1,706
44			답	2,610	2,610	2,610	2,610
45			대	321	321	321	321
46			임	26,281	26,281	26,281	26,281
47			임	47,083	47,083	39,298	39,298
48			임	52,165	52,165	50,164	50,164
						2,001	2,001
49			임	12,099	12,099	12,099	12,099
50			전	1,104	1,104	1,104	1,104
51			임	6,248	6,248	6,248	6,24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No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2			임	16,860	16,860	16,860	16,860
53			임	6,050	6,050	6,050	6,050
54			답	1,935	1,935	1,935	1,935
55			전	1,464	1,464	1,464	1,464
56			임	16,959	16,959	16,959	16,959
57			답	833	833	833	833
58			전	6,238	6,238	6,238	6,238
59			답	1,636	1,636	1,636	1,636
60			답	3,210	3,210	3,210	3,210
61			임	579	579	579	579
62			대	155	155	155	155
63			전	4,549	4,549	4,549	4,549
64			답	274	274	274	274
65			전	2,362	2,362	2,362	2,362
66			대	470	470	470	470
67			답	826	826	826	826
68			전	388	388	388	388
69			전	4,734	4,734	4,734	4,734
70			대	264	264	264	264
71			임	52,661	52,661	42,502	42,502
72			임	9,917	9,917	9,917	9,917
73			전	1,666	1,666	1,666	1,666
74			답	2,294	2,294	2,294	2,294
75			답	813	813	813	813
76			답	3,633	3,633	3,633	3,633
77			전	1,068	1,068	1,068	1,068
78			전	5,901	5,901	5,901	5,90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No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9			대	255	255	255	255
80			답	2,139	2,139	2,139	2,139
81			답	4,159	4,159	4,159	4,159
82			대	777	777	777	777
83			전	5,369	5,369	5,369	5,369
84			전	1,613	1,613	1,613	1,613
85			답	1,531	1,531	1,531	1,531
86			대	258	258	258	258
87			답	463	463	463	463
88			전	4,995	4,995	4,995	4,995
89			답	2,218	2,218	2,218	2,218
90			임	1,587	1,587	1,587	1,587
91			전	298	298	298	298
92			전	575	575	575	575
93			답	3,316	3,316	3,316	3,316
94			답	271	271	271	271
95			전	4,698	4,698	4,698	4,698
96			대	483	483	483	483
97			답	364	364	364	364
98			임	52,800	52,800	52,800	52,800
99			답	3,404	3,404	3,404	3,404
100			답	2,020	2,020	2,020	2,020
101			답	782	782	782	782
102			임	35,603	35,603	35,603	35,603
103			전	238	238	238	238
104			대	205	205	205	205
105			전	621	621	621	621
106			답	522	522	522	522
107			전	344	344	344	34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No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8			답	3,121	3,121	3,121	3,121
109			전	2,119	2,119	2,119	2,119
110			임	15,769	15,769	15,769	15,769
111			전	3,769	3,769	3,769	3,769
112			답	433	433	433	433
113			답	2,608	2,608	2,608	2,608
114			전	1,372	1,372	1,372	1,372
115			대	377	377	377	377
116			대	337	337	337	337
117			전	1,445	1,445	1,445	1,445
118			답	94	94	94	94
119			대	381	381	381	381
120			전	744	744	744	744
121			대	261	261	261	261
122			전	1,540	1,540	1,540	1,540
123			임	17,851	17,851	17,851	17,851
124			임	29,950	29,950	29,950	29,950
125			전	29	29	29	29
126			전	2,304	2,304	2,304	2,304
127			대	489	489	489	489
128			임	1,864	1,864	1,864	1,864
129			전	1,988	1,988	1,988	1,988
130			대	112	112	112	112
131			잡	4,124	4,124	4,124	4,124
132			전	1,770	1,770	1,770	1,770
133			대	202	202	202	202
134			잡	962	962	962	962
135			잡	1,296	1,296	1,296	1,296
136			잡	456	456	456	456
137			잡	3,113	3,113	3,113	3,113
138			전	2,168	2,168	2,168	2,168
139			대	370	370	370	3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No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0			도	1,686	275	205	275
141			임	7,636	7,636	7,636	7,636
142			임	5,950	5,950	5,950	5,950
143			도	2,942	129	67	129
144			대	248	248	248	248
145			구	88,778	88,778	18,961	18,961
146			도	56	56	56	56
147			도	1,246	1,246	1,246	1,246
148			구	4,866	4,866	4,866	4,866
149			도	60	60	60	60
150			도	268	268	268	268
151			도	512	512	512	512
152			도	549	549	549	549
153			도	241	241	241	241
154			도	798	752	798	752
155			도	496	441	496	441
소 계				1,019,599	1,015,274	927,482	927,51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별지2

표

순번	내역	지급대상	금액(원)	비고
1	근저당권말소비용	Y	38,000,000	원고 인정 비용
2	지급수수료	법무사사무소 외	42,274,100	
3	지급보증료	Z은행	52,532,948	
4	매각손실	국민주택채권	27,846,680	
5	D 대여금채무	AA 외 13	2,889,022,101	쟁점비용
6	D 임금채무	AB 외 5	473,949,263	
7	분묘이장보상비	AC	54,000,000	
8	D 변호사보수채무	법무법인 AD	270,000,000	
9	D 공사대금채무	AE 외 3	883,067,850	
10	D 대여금·공사대금채무	AF	1,220,000,000	
11	D 공사대금채무	AG	170,544,000	
12	지방세체납액	[redacted]시	560,000,000	
13	환경평가 과태료	[redacted]지방환경청	15,180,000	
14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65,021,300	
15	도로점용료	한국자산관리공사	12,755,330	
16	도로점용료	[redacted]도	29,833,320	
17	각종 점·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redacted]시	11,768,680	
		합계	6,815,795,57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별지3

표

원고의 법인장부로 확인한 이 사건 취득세의 간접비용

순번	내 역	지급 대상	금액(원)	비고
1	송수관로 1구간 시설물 취득	(주)	241,863,000	송수관로 시설물 취득
2	송수관로 2구간 시설물 취득	(주)	6)	
3	송수관로 3구간 시설물 취득	(주)	634,604,850	
4	압류 해제	시(지방세)	450,000,000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지방세 과태료 근저당권 말소비용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	시	58,240,460	
6	도로 점용료	관리	12,755,330	
7	도로 점용료	도로관리사업소	29,833,320	
8	환경평가 과태료 압류 해제	지방환경청	15,180,000	
9	검찰청 과태료 압류 해제	지검	4,900,000	
10	골프장매도 자문컨설팅 용역	법무법인	270,000,000	골프장 양도·양수 컨설팅 비용
11	골프장매수 자문컨설팅 용역	(주)	165,000,000	
12	이 사건 계약 용역비		30,000,000	
13	토목 공사비용(35% 공정율)		1,220,000,000	토목공사 수목이식 골프장 조성공사
14	시험포 조성		20,064,000	
15	수목 이식 공사		400,000,000	
16	GTB & Pond 페어웨이 파종		150,480,000	
17	친인척 등 채권	외 15명	3,459,022,101	담합 비용
18	직원 미지급 급여	등 8명	473,949,263	
19	홈페이지 도메인		6,600,000	
20	건강 보험 연체료	국민건강보험	65,021,300	
합계			7,707,513,624	

※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160,653,728원은 과세표준에서 별도임.

6) ① 원고는 이 사건 송수관로 2구간 취득(과세표준 942,000,000원)에 따른 취득세 25,996,550원을 2017.11.15. 납부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함.
② 근저당권 말소 비용 38,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인정한 금액이므로 원고의 법인 장부로 추가 확인한 취득세 간접비용 합계에서 제외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별지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끝.